법무법인(유) 린

Anti – Money Laundering &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Newsletter

2026.11. 26.

FATF의 국제 스캠 범죄 대응 보고서와 국내 금융회사의 AML 위험관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2026년 11월 5일, 국제 스캠 범죄 조직의 불법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Combating End-to-End Illicit Financial Flows Linked to Scam Compounds: Applying the FATF Toolkit to the Fraud Epidemic」 보고서(이하 "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집한 약 120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적 스캠 범죄의 운영구조와 범죄수익의 형성·이전·세탁·재투자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FATF는 스캠 범죄 조직이 금융계좌, 비공식 송금망, 가상자산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이전·은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이 단시간에 여러 금융기관과 국가를 거쳐 이동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후적인 의심거래 탐지 및 보고뿐 아니라 범죄자금의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6년 6월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23일 개최된 제2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거래정지 대상을 중대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 Areas

AML / CFT팀

Contact

김채윤 변호사
T. 02-3477-8685
E. cykim@law-lin.com

오병권 미국변호사
T. 02-3477-8695
E. byungkwon.oh@law-lin.com

1. 국제 스캠 범죄의 자금세탁 구조와 주요 위험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스캠 범죄 조직(Scam Compounds)은 대규모 시설이나 분산된 거점을 기반으로 온라인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금융사기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FATF는 이러한 조직이 피해자 모집과 기망, 자금 수취,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의 재투자까지 분업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의 이동과 세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단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단	자금세탁 방식
차명·대포계좌(Money Mule Accounts)	다수의 계좌로 피해자금을 수취한 후 단기간 내 다른 계좌로 분산·이전
비공식 자금이전망	비공식 송금서비스 및 전문 자금세탁 조직을 통한 국경 간 범죄수익 이전
가상자산	가상자산 매매·이전 및 장외거래(OTC) 등을 통한 범죄수익의 전환과 은닉
법인 및 전문 중개서비스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가장하는 법인이나 중개업자를 통한 자금 이동 및 세탁

FATF는 일부 사례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불과 2분 만에 다른 계좌로 이전되는 등 범죄자금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스캠 범죄 조직 내부에서 가상자산의 교환과 현금화를 지원하는 별도의 거래조직을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피해자가 기망에 따라 직접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가 개별 거래정보만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수취계좌에 유입된 자금이 여러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거쳐 신속하게 이동하면, 의심거래가 탐지되더라도 범죄수익의 추적과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고객의 거래금액이나 빈도뿐 아니라 자금의 유입·이전 경로, 거래상대방의 특성 및 고객의 통상적인 거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7 LIN. All Rights Reserved.

2. FATF의 주요 대응 방향

FATF는 이번 보고서에서 스캠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금융회사의 AML/CFT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수익의 전주기(End-to-End)에 걸친 대응. FATF는 범죄자금이 이미 이동한 이후 추적·환수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피해자 모집과 기망, 자금 지급 및 이전, 세탁과 재투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불법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 스캠 범죄 거점뿐 아니라 범죄조직의 운영자, 자금세탁 중개업자 및 관련 금융·통신 인프라를 함께 분석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스캠 범죄 조직이 금융기관, 가상자산사업자, 통신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개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FATF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뿐 아니라 통신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등 관련 기관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자금의 이동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자금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국제공조. FATF는 사기범죄가 탐지되거나 신고된 이후 최초 24~72시간이 범죄자금의 동결과 회수에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국경 간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와 수사기관 사이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FATF는 범죄조직이 인공지능, 딥페이크 및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등을 활용하여 범죄수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관계기관도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탐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麟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13층, 14층 (서초동, 316타워) | Tel: 02-3477-8695 | Fax: 02-3477-8694
E-mail: lin@law-lin.com | © 2017 LIN. All Rights Reserved.

3. 국내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와 AML 규제 동향

국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팀미션사기 등 재화·용역의 거래를 가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는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범죄자금의 신속한 차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경찰청 및 금융권과 협력하여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 법령상 지급정지 제도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경찰의 확인 등을 거쳐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임시 거래정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정지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임시 거래정지 기간은 7영업일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 및 경찰의 요청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정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10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한 신종피싱 의심계좌는 총 **11,586건**에 이릅니다.

특히 FATF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범죄자금의 신속한 보전을 위한 해외 사례 중 하나로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운영실적이 모두 국제 스캠 범죄 조직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유사한 범죄자금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자산보전 체계의 사례로 제시된 것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23일, 향후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거래정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FATF가 강조하는 범죄수익의 신속한 차단과 부합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신종피싱 거래정지 조치와 향후 입법을 통해 도입될 거래정지 제도는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麟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13층, 14층 (서초동, 316타워) | Tel: 02-3477-8695 | Fax: 02-3477-8694
E-mail: lin@law-lin.com | © 2017 LIN. All Rights Reserved.

4. 국내 금융회사의 AML/CFT 실무상 시사점

이번 FATF 보고서는 금융사기 범죄수익의 신속한 이전·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체계와 함께 거래 모니터링,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대응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AML/CFT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체계**: 신규 계좌로 다수의 자금이 유입된 직후 다른 계좌로 분산·이전되는 거래, 고객의 통상적인 거래행태와 부합하지 않는 반복적 송금, 단기간 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거나 해외로 이전되는 거래 등 새로운 금융사기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거래 모니터링 시나리오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특성만으로 범죄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고객의 위험수준과 거래목적 등을 함께 고려하는 위험기반접근법(RBA)이 필요합니다.

- **의심거래보고 및 거래정지 절차의 구별**: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의무와 거래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는 법적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의심거래보고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련 거래를 임의로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는 거래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고객확인, STR 검토 및 거래정지 여부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신속한 대응체계**: 사기 피해 신고나 위험계좌 정보가 접수된 경우 관련 부서가 신속하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유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및 의심거래보고 관련 비밀유지 의무 등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麟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13층, 14층 (서초동, 316타워) | Tel: 02-3477-8695 | Fax: 02-3477-8694
E-mail: lin@law-lin.com | © 2017 LIN. All Rights Reserved.

국내 금융회사 AML/CFT 실무 점검 3대 포인트

금융사기 범죄수익의 이전을 막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가 실무적으로 강화해야 할 3가지 핵심 대응 과제를 제시합니다.



포인트 1

거래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고도화

신종 피싱 위험 요인을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합니다.



포인트 2

의심거래보고와 거래정지 절차 구분

의심거래보고 검토와 서로 다른 보고 검토와 거래정지 의사결정 절차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포인트 3

관계기관 협조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경찰·FIU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정비하고 법령상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금융회사는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거래제한 사유와 판단근거를 적절히 기록·보존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및 거래정지 해제절차의 적정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중대 민생침해범죄 전반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권한과 의무, 관계기관과의 업무분담 및 고객 보호절차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내부 업무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린 AML/CFT팀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체계, 금융사기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거래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 대응절차, AML/CFT 내부통제와 금융당국 검사 대응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린 AML/CFT팀(Tel. 02-3477-86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13층, 14층 (서초동, 316타워) | Tel: 02-3477-8695 | Fax: 02-3477-8694
E-mail: lin@law-lin.com | © 2017 LIN. All Rights Reserved.